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3월 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3월 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제11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3월16일)
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해양)

□ 제안이유

○ 오정구보건소, 소사구 범박동의 청사이전 및 원미구 약대동의 지번 합병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○ 일부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 변경(안 별표 1)

기관명	현 행	변 경
오정구보건소	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17의 5번지	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29번지
원미구약대동	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23-3번지	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23번지
소사구범박동	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47의8번지	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5-4번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오정구보건소는 2003. 1. 1, 소사구보건소는 2003. 6.25에 이전하였다면 발생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지금에서 개정하는 이유는?	○ 앞으로는 발생시점에서 즉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공공기관이 청사이전 등으로 소재지 변경시 관련 조례개정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늦게 개정되어 경우가 있는데 향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.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28호
의결 년월일	2004.3.19 (제111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3. 3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오정구보건소, 소사구 범박동의 청사이전 및 원미구 약대동의 지번합병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일부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 변경(안 별표 1)

기관명	현 행	변 경
오정구보건소	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17의 5번지	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29번지
원미구약대동	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23-3번지	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23번지
소사구범박동	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47의8번지	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5-4번지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중 부천시오정구보건소의 소재지란중 “217의5번지”를 “129번지”로 하고, 원미구란의 약대동의 소재지란중 “123-3번지”를 “123번지”로 하며, 소사구란의 범박동의 소재지란중 “47의8번지”를 “155의4번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